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 협력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시행내규(안)**

---

2023. 7.



**가평군시설관리공단**  
GAPYEONG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 협력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시행내규(안)

## □ 제정이유

- (공단 경영 주민참여 활성화) 공단 경영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단의 실정에 맞는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활동 보장과 참여 지원) 제도화를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활동 보장과 참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기 위함.

## □ 주요골자 (15조 구성)

- 주민참여 협력 추진 위원회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5조)
- 주민참여 협력 추진 위원회 (안 제6조 ~ 15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원회 역할
  - 회의 소집 및 협의 방법
  - 위원회 사무관리
  - 위원의 수당 등

## □ 참고사항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조
  -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공단 위원회 관리운영 부서와 사전 협의완료
- 절 차: 기안 → 이사장 결재 → 발령
- 참고사항
  - 벤치마킹 결과보고 1부.
  - 양주도시공사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 1부.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 운영규정 1부.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 협력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 시행내규(안)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운영에 대한 가평군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단 경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공단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

나. 주소 또는 거소를 가평군에 두고 있는 자

다. 가평군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라. 직·간접적으로 공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자

2. “전문가”란 관련 분야에 학술적,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단 사업분야 관련 전문가

나.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

다.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라. 농업 또는 상공업 분야 전문가

마. 그 밖에 공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3. “위원회”란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조정,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주민을 포함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말한다.

4. “분과 위원회”란 공단 시설 및 특정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자문, 조정, 협의 등을 하기 위해 주민을 포함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주민참여 협력 추진 위원회의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민참여”란 공단의 경영 계획 수립부터 실행과 평가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민과 공단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8. “경영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공단 정책, 사업 등 경영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공단의 책무) ①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공고히 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경비 등의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협력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단의 사업 운영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며, 주민참여 총괄 부서장과 상정 안건과 관련된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때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1. 주민

2. 전문가

④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의 활동 기간은 2년 단위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회의 역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동한다.

1. 사업 추진방향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관한 사항
2. 경영계획 수립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3. 사업 또는 경영과 관련된 토론회나 공청회 참석에 관한 사항
4. 주요 민원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서비스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
6. 시설·환경 관리 및 개선과 안전 위험요인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제 및 지역 숙원사업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공단 사업 운영 또는 주민위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제7조에 의해 구성된 참석인원 외에 추가로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범위 내 제14조에 따라 동일하게 수당 지급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방법) ① 협의사항은 위원 상호 간 자유롭게 토의하여 제출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② 제1항의 개선방안 도출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주민이 우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사무관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소집 및 의결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경영정보)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의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이사장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소속 임직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본 내규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  | 소 관 팀          | 혁신기획팀         |
| 입<br>안<br>자 |  | 팀 장<br>직위 · 성명 | 혁신기획팀장<br>이수동 |
|             |  | 담당자<br>직위 · 성명 | 대리<br>류기목     |